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Expert Report
- III. News
- IV. Event

Key Contacts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 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최신 이슈, 국내외 최신 동향, 법령 및 감독당국 소식, 전문가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의 원본이 있는 경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금융감독원, 2020.9.22]

1. 개요

-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 및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진 주도 하에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시 기능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로 안내

2. 회계부정 사례 및 예방 Check Point

(1) 매출 허위계상

①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사례	내용
회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사는 X1년 7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고 홍보 • 시제품 불량 발생으로 X2년말까지 납품이 안되었음
회계부정 의심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는 언론 기사 • 신제품 개발 즉시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
회계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사는 X1년에 매출 허위계상, X2년까지 매출채권 허위계상
점검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 매출 계상의 적정성 검토

②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사례	내용
회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사(코스닥 상장)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목적으로 조작을 계획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① 3의2)
회계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거래처 매출 발생,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흑자로 전환

의심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추진 명목 본사 직원을 종속회사로 서류상 발령 • 연결재무제표는 영업적자인데 별도재무제표는 흑자 • 별도재무제표 상 거액의 당기순손실 발생, 영업손익은 흑자
회계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 사는 차명회사(K 사)에 대해 허위매출 계상 •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a 사)를 통해 K 사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계상)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 • 본사직원을 종속회사(b 사)에 허위 발령하여 인건비 조작 등
점검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외부감사인)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 인건비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현황 등 점검 • (정보이용자)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의 근거 없는 흑자 전환 등 회계부정 징후 발견 시 신중한 투자

(2) 자산 허위계상

① 매출채권 허위계상(임직원 횡령 의심거래)

사례	내용
회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임직원은 장기간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동시 수행
회계부정 의심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자금이 재무담당임원 등 임직원 개인계좌에 입금 • 일부 거래처의 경우 매출 증가액보다 매출채권 증가액이 큼 • 장기간 회계·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수행
회계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자금을 유출(횡령 의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허위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가 전혀 없는 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기록 조작 ➢ 매출채권 잔액을 조작한 결산명세서를 외부감사인에 제출
점검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 적정성,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프로세스 점검 • (정보이용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

② 선급금 허위계상 등(대표이사 횡령 거래)

사례	내용
회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 사는 X1년 10월 사모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X2년 2월 이모씨가 대표이사 취임 (*동일시점 최대주주 변경) • 대표이사의 부당한 자금 인출,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 대여 등 비정상적인 거래 빈번
회계부정 의심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사모 유상증자 및 CB 발행 빈번 •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등의 규모 대폭 증가 • 대표이사가 특정 은행계좌 단독관리 및 회사자금 임의 사용 (이사·감사의 도장 관리)
회계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
점검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부당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 • (정보이용자)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무자본 M&A 의심거래, 빈번한 증자 및 CB·BW 발행 회사에 대한 투자 유의

3. 안내사항

-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철저한 준수
 -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 작성
 -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조치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확대
 -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 시 회사 등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 모두에게도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 위반금액의 20%,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 가능
 - **이외 검찰고발·통보 등 조치 가능
 - 중대한 감사부실이 확인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 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6월 이내) 병과 가능

금융그룹 공시가 이달 말 최초로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 2020.9.17]

1. 개요 및 경과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가 2020년 9월말부터 실시
 - 당초 금년 5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6월 첫 공시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들의 준비시간, 코로나19 등에 따른 업무부담 등 회사들 의견을 들어 9월부터 실시함
 -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대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9월말 실시되는 최초 공시에는 20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20년 1·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될 예정*임
 - *금융그룹별로 일정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9.29(화)까지 동 공시를 완료할 계획

2. 공시 내용·주기·방법 등

- (공시내용)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을 공시함
 - (소유·지배구조)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 및 주요 임원의 비금융계열사 겸직 현황 등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본적정성)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
 - (내부거래)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자산(부동산 임대차 등) 및 상품용역 거래 등과 함께 금융계열사간 펀드 판매 및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다양한 내부거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대주주익스포저) 금융계열사별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익스포저 현황이 공시됨
- (공시주기)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함
- (공시방법)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공시자료를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함

3. 기대효과

- 그간 개별 금융회사 공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요인, 위험관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 금융소비자·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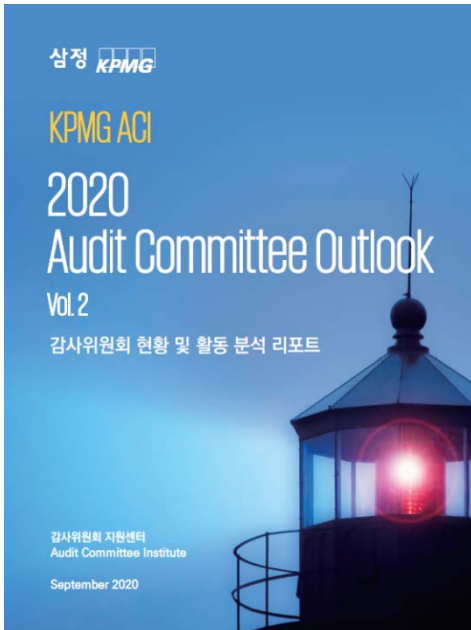
➤ 아울러, 정부는 금융그룹 공시 제도를 법제화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림

*①감독당국 주도의 자본·위험규제(Pillar1), ②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평가·점검(그룹위험 관리체계, Pillar2),③금융그룹 공시 강화(시장의 감시기능, Pillar3)를 법안에 고르게 반영

▲ Back to top

II. Expert Report

「2020 Audit Committee Outlook」



삼성KPMG ACI는 9월 11일 「KPMG ACI 2020 Audit Committee Outlook」을 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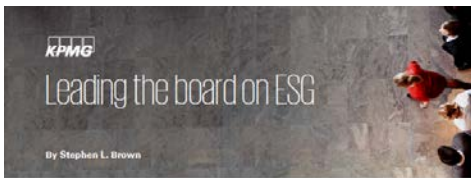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재직기간이 감소하고 여성 감사위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회의활동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였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는 감사위원 중 3분의 1을 상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이래, 감사(위원회) 교육 및 지원조직의 증가 또한 주목할 점입니다.

[출처]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Leading the board on ESG」



There has been a precipitous change in employee, customer, shareholder, and community expectations as to how corporations are governed. Specifically, these groups are calling for increased transparency around how companies addres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ssues such as climate risk, employee wage growth, job insecurity, and diversity and inclusion.

BlackRock and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for example, have stated that they may vote against directors of companies that they don't believe are responsive on these issues. And since the Business Roundtable issued its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several boards have received shareholder proposals asking how their companies are factoring the interests of all stakeholders into efforts to create long-term value.

As expectations for oversight of ESG issues evolve, lead directors have a role to play in guiding discussions on ESG, separate board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ir companies. We suggest lead directors focus on three areas:

1. Level setting

It is critical that the board and management are aligned on what ESG means for the company, including the three to five major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that, in the near and long term, could mater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enterprise (i.e., relevant ESG) and how management is addressing these issues and communicating the company's efforts to stakeholders. In our experience, directors approach ESG from a variety of viewpoints. The lead director should know where each director stands on the relevant ESG issues and where there is consensus, if any, as a board. The lead director can also help determine if the board needs additional

education on relevant ESG issues, whether through presentations by management or outside experts, or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2. Agenda and strategy The board should understand management's view of long-term shareholder value and the company's strategy for creating it. The lead director should confer with the CEO about how relevant ESG issues are integrated into strategy and oper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here, if at all, these issues appear on board agendas. While certain it may be appropriate to discuss these as stand-alone issues, we believe that over time relevant ESG issues should be integrated into strategy discussions.

As expectations for oversight of ESG issues evolve, lead directors have a role to play in guiding discussions on ESG, separate board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ir companies.

The lead director can also work with the board committee chairs to determine the role of each committee in overseeing ESG and related stakeholder issues. For example, the audit committee may help reassess whether certain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임금상승, 고용안정 등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보고서는 ESG 감독에 대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ESG, 경영 목표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해야 하며, 장·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ESG)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KPMG US

▲ Back to top

III. News

KPMG

- 삼성KPMG,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파이낸셜뉴스]
- 삼성KPMG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회의·교육 증가" [파이낸셜 뉴스]

Accounting Transparency

- '부실감사 반복' 영국 회계당국, 조사확대 [내일신문]
- '新 외부감사법' 도입, 기업가치 끌어올리기 주역 '톡톡' [프라임경제]
- PCAOB adds projects on auditor independence and audit evidence [Accounting Today]

Internal Audit

- Half of internal audit functions affected by coronavirus redeployment [Accountancy Daily]
-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Audit and Compliance Partnership [JDSUPRA]

Regulatory Issue

- SEC changes disclosure rules for banks [Journal of Accountancy]
- FASB's new chairman plans review of impact of standards [Accounting Today]

Corporate Governance

- 일본기업 ESG 공시 확대에도 외부검증 부족 [내일신문]
- 금융권 여성 임원 평균 5% [여성신문]
- "지배구조에 정답 없어...오너·전문경영인 조화 이뤄야" [매일경제]
- Corporate governance in COVID-19: Cybersecurity and technology considerations [Journal of Accountancy]

▲ Back to top

IV. Event

제8회 삼정 KPMG Advanced Auditor Program_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안

※ COVID-19로 인해 본 세미나는 Webinar(웹세미나)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현장교육 진행 시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14:00 ~ 16:20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Rose room (5층)
- 참가신청: 추후 공지 예정
 - 문의: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박슬기 연구원(02-2112-3305, spark77@kr.kpmg.com)
- 프로그램: Session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Session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1: 설계 및 운영 관점
Session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2: 평가 및 보고 관점

(사)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전문교육

- 일 시: 2020년 10월 20일(화) ~ 21일(수)
- 장 소: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3층 301호(서울 강남구 역삼동 619-16)
- 교육내용:
 - NEW COSO 기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삼정 KPMG 심정훈 상무)
- 신청 및 입금기한: 2020년 10월 14일(수) 오후 5시
- 문의: 교육운영팀 진가영 대리(gyjin@iia Korea.or.kr)

▲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전무이사
ACI Leader



심정훈 상무이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강환우 이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